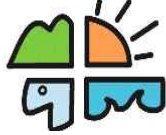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88호 2016년 4월 12일(화)

조 례

○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415, FAX : 639-2106)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 2469 호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처리시설 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제36조를 제41조로 하고, 제9장에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유지관리 자문위원회) 시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 소속 관계공무원 3명
2. 속초시의원 또는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3. 입주업체 대표 3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3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그 밖의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4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